

#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7
----------	-----

제출년월일 : 2005년 5월 17일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을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전문신고의 방지와 피신고인에 대한 부담경감

## 2. 주요내용

- 신고방법 중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으로써 위반 행위 서류정리 및 우편접수 편의제공(안 제11조)
- 신고포상금 지급시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를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전문신고의 방지(안 제15조)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안 별표1)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조례개정(안) 준칙 (행자부 2004. 12월)
- 입법예고 : 2005. 3. 14. ~ 2005. 4. 4.
- 입법예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4. 본 문 : 덧붙임

##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한다”를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8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부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부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사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부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주) 1.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범위에서 산입한다.

2.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자포상금지급조례</p> <p><b>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생 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u>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u>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li> <li>2. <u>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u>에 의한 <u>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cm이하의 종이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u></li> <li>3. (생 략)</li> </ol> <p><b>제11조(신고방법)</b>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u>3일 이내</u>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명 :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자포상금지급 조례</p> <p><b>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현행과 같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식품위생법</u>」----- -----「<u>식품위생법</u>」----- ----- -----</li> <li>2.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3호의 <u>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u>--「<u>통계법</u>」-- -----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b>제11조(신고방법)</b> ①----- -----<u>7일 이내</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p> <p>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p> <p>① (생략)</p> <p>1. ~ 2. (생략)</p> <p>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u>100만원을 초과한 경우</u></p> <p>4. ~ 7.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p> <p>①----- -----하되, <u>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p> <p>①(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u>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u></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현 행 >

(별표 1)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u>100</u>	<u>200</u>	<u>300</u>	<u>20</u>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u>50</u>	<u>100</u>	<u>200</u>	<u>10</u>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u>30</u>	<u>50</u>	<u>100</u>	<u>7</u>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u>10</u>	<u>30</u>	<u>50</u>	<u>3</u>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u>100</u>	<u>200</u>	<u>300</u>	<u>20</u>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u>50</u>	<u>100</u>	<u>200</u>	<u>10</u>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u>30</u>	<u>50</u>	<u>100</u>	<u>7</u>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바. 식품제조·가공업, 축적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주) 1.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범위에서 산입한다.

2.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정안>

(별표 1)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전문점·합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제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u>50</u>	<u>100</u>	<u>200</u>	<u>10</u>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30</u>	<u>50</u>	<u>100</u>	<u>5</u>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u>10</u>	<u>30</u>	<u>50</u>	<u>3</u>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u>5</u>	<u>10</u>	<u>30</u>	<u>2</u>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u>50</u>	<u>100</u>	<u>200</u>	<u>10</u>

주) 1.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범위에서 산입한다.

2.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